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17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이종욱·송언석·이인선

박수민 • 박수영 • 신동욱

이종배 • 박성훈 • 최형두

성일종 · 송석준 · 김상훈

김종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비과세) ①
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	
다)에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가	<u>2027년 12월 31일</u>
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